

# 海洋環境保全을 위한 UNEP의 地域海計劃에 관한 研究

李溶熙 · 權文相\*

## 目 次

- I. 序 言
- II. UNEP地域海計劃
- III. 地域海別 實踐計劃 內容 分析
- IV.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의 現況 分析
- V. 結 語

## I. 序 言

인구의 증가에 의한 生活廢棄物의 증대, 産業活動의 확대로 인한 産業廢棄物 및 海上物動量의 증가, 干拓 埋立 등 수많은 연안개발활동 등은 금세기들어 海洋環境에 그 수용의 한계점을 벗어나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오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21세기에서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폐쇄해인 東海, 黃海 및 東中國海로 구성된 北西太平洋地域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中國, 北韓 등 구성국 등이 開發途上國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급속히 증가시킴에 따라 해양환경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黃海의 경우 그 환경오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sup>

\* 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1)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한 중 환경협력 추진방안 수립연구, 1993. 4, pp.43-55.

海洋環境保全을 위한 國際的 活動은 일반적으로 汎世界的 次元과 地域的 次元에서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특히 대상해역의 해양특성 및 참여국가간의 산업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의 성격상 지역적 차원의 보전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sup>2)</sup>

地域的 次元의 해양환경보전활동은 유엔環境計劃(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 : UNEP)<sup>3)</sup> 주도로 수행되고 있는 것과 이와는 별도로 地域國家間的 合意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 바, 전자의 활동으로서는 地中海地域을 비롯한 전세계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140여 개국의 참여하에 수행되고 있는 UNEP 地域海計劃(Regional Seas Program)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는 北海를 포함한 北大西洋地域의 海洋環境保全體制와 발틱해지역의 헬싱키協約體制를 들 수 있다.<sup>4)</sup>

우리나라를 비롯한 日本, 中國, 北韓 및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北西太平洋地域에서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부터 UNEP 地域海計劃의 일환으로 北西太平洋 海洋環境保存을 위한 地域協力會議를 개최하여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지역단위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3차회의가 진행된 현재까지 각국의 해양환경상태와 기본적인 국가입장을 제시하고, 향후 진행하여야

2) Okidi, "Toward Regional Arrangement for Regulation of Marine Pollution : An Appraisal of Options", 4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1977), pp. 13-19.

3) UNEP는 유엔의 보조기관으로서 58개국으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와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예산은 약4,000만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노명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기구", 환경법연구, 제14권(1982), pp. 168-171 참조.

4)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용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내법적 입법현황과 전망",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2호(1991), pp. 295-301 참조.

할 기본적인 實踐計劃(Action Plan)을 작성하고 있다.

성공적인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産業發展程度의 差異, 財源確保의 어려움, 國家間 利害關係의 相衝 등을 적절히 해소하여야 하며,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천방안을 도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이미 수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지역협력체제를 연구 분석하여 이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더우기, 지역협력사업의 대상해역인 동해 및 황해를 모두 면하고 있으며 동 해역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他地域의 先例 分析을 통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사항이다.

이하에서는 UNEP 地域海計劃에 대하여 개관하고, UNEP 地域海計劃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지역의 활동사항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작성되고 있는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NOWPAP)을 검토하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제언을 서술하고자 한다.

## Ⅱ. UNEP 地域海計劃

### 1. 概 觀

地域海 環境保護를 위한 國際的인 努力에 있어서 UNEP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즉, UNEP는 단순한 자금원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地域海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討論과 協力の 場을 제공하여 오고 있다. 또한 실천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地域海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이 환경문제의 相互關聯의 特性을 고려하여 統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全體的인 調整者의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sup>5)</sup>

UNEP 地域海計劃의 근원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人間環境會議(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회의를 통하여 환경분야의 국제활동을 총망라하는 '人間環境을 위한 實踐計劃(The Action Plan for the Human Environment)'<sup>6)</sup>과 '海洋汚染의 評價 및 統制를 위한 一般原則(the General Principles for Assessment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sup>7)</sup>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스톡홀름회의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총회가 1972년 유엔체제내에서 환경활동을 수행하고 조정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UNEP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sup>8)</sup>

1972년 회의 결과에 따른 국제환경예의 접근방법은 이론적으로 모든 국제환경문제를 포괄하는 綜合的이고 單一한 計劃의 樹立이 요구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관계로 UNEP는 1975년에

5) UNEP, *Guide lines and Principles for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Areas of Regional Seas, UNEP Regional Seas Reports and Studies No.15* (1982), p. 3.

6) A/CONF.48/14/Rev.1. 인간환경을 위한 실천계획은 i) 환경활동의 구성, ii)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위한 권고, iii) 실천계획 등 3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활동의 구성에는 환경활동의 분야를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지원조치(Supporting Measures)로 구분하였으며,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위한 권고부문은 환경보호를 위해 취해져야 할 국제활동으로서 109개의 사항을 권고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실천계획부문에서는 109개의 권고사항을 환경평가, 환경관리, 지원조치 분야로 구분하여 재정리한 형태를 띄고 있다.

7) A/CONF.48/14/Rev.1, Annex III. 해양오염의 평가 및 통제물 위한 일반원칙은 해양오염에 관한 정부간 작업그룹이 제시한 23개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8)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XXVII), 15 December 1972.

개최된 제3차 집행이사회에서 UNEP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6개의 集中分野(Concentration area)<sup>9)</sup>를 선정하였으며, 海洋環境保護를 그 분야의 하나로 결정하였다.<sup>10)</sup>

이 결정에 따라 UNEP는 1974년부터 시작된 地域海計劃(Regional Seas Programme)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으며, 海洋汚染의 統制 및 海洋과 沿岸資源의 管理를 위한 手段으로서 지역적 접근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오고 있다.<sup>11)</sup>

UNEP가 추진하여온 地域海計劃은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환경오염에 취약한 몇개의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sup>12)</sup>

20여년간 진행되어온 地域海計劃은 현재까지 Fig.1 및 Table.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13개 지역, 140개 沿岸國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3개 지역중 地中海地域, 쿠웨이트地域, 西部 및 中央아프리카지역, 카리브海地域, 紅海 및 아덴灣地域, 東아시아地域, 南東太平洋地域, 南太平洋地域, 東아프리카地域, 南아시아地域, 黑海地域 등 10개 지역은 實踐計劃(Action Plan) 또는 地域協定을 체결하여 地域海洋환경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北西太平洋地域, 南아시아地域, 南西大西洋地域은 實踐計劃 또는 協約을 준비중에 있다.

9) 6개의 집중분야는 i) 인간거주(human settlements), ii) 인간과 환경건강, iii) 생태계, iv) 해양환경, v) 환경과 개발, vi) 자연재해 등이다.

10) Lynton Keith Caldwel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 Emergency & Dimensions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1991), p. 152.

11) 지역해계획은 1985년 해양 및 연안지역활동센터(Oceans and Coastal Areas Program Activity Center : OCA/PAC)로 변경되었으며, 연안역 관리 및 해양보전 문제가 새로운 분야로 추가시킨 바 있다.

12) 이영준, 국제법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82),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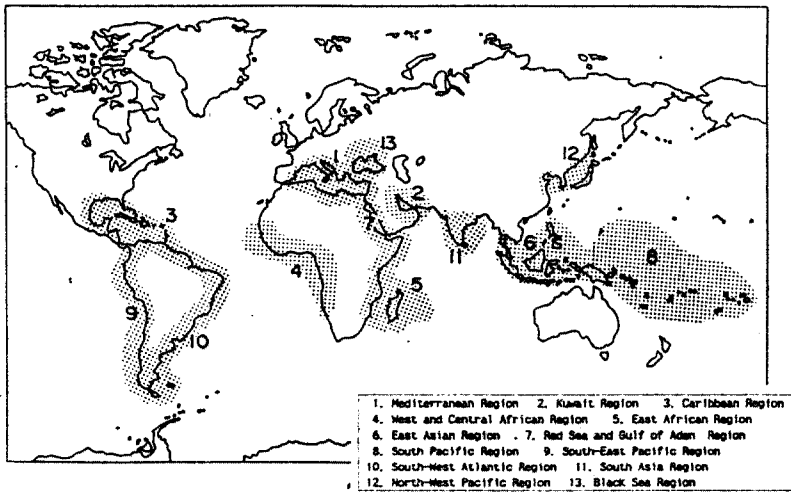


Fig. 1. UNEP 地域海計劃의 適用海域

Table 1. UNEP 地域海計劃의 現況

NAME OF THE REGION	MEMBER STATES AND TERRITORIES	ACTION PLAN	CONVENTION
Mediterranean Action Plan	Albania, Algeria, Cyprus, Egypt, France, Greece, Israel, Italy, Lebanon, Libya, Malta, Monaco, Morocco, Spain, Syria, Tunisia, Turkey, Yugoslavia (18)	1975	1976(1978)
Kuwait Action Plan	Bahrain, Iran, Iraq,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8)	1978	1978(1979)
West and Central African Action Plan	Angola, Benin, Cameroon, Cape-Verde, Congo, Cote d'Ivoire, Equatorial, Guinea, Gabon,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Liberia, Mauritania, Namibia, Nigeri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Togo, Zaire (21)	1981	1981(1984)
Caribbean Action Plan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Colombia,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EC, France,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etherlands, Nicaragua, Panam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United States of America, Venezuela (29)	1981	1983(1986)
Red Sea and Gulf of Aden Action Plan	Egypt, Jordan, Palestine, Saudi Arabia, Somalia, Sudan, Yemen (7)	1982	1982(1985)
East Asian Seas Action Plan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5)	1981	
South East Pacific Action Plan	Chile, Colombia, Ecuador, Panama, Peru (5)	1981	1981(1986)
South Pacific Action Plan	Australia, Cook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Kiribati, Marshall islands, Nauru, New Zealand,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Tonga, Tuvalu,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Vanuatu, Western Samoa and South Pacific territories of France (18)	1982	1986(1990)

NAME OF THE REGION	MEMBER STATES AND TERRITORIES	ACTION PLAN	CONVENTION
Eastern African Action Plan	Comoros, EEC, France, Kenya, Madagascar, Mauritius, Mozambique, Seychelles, Somali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France (La Reunion) (11)	1985	1985(not yet in force)
South Asian Seas Action Plan	Bangladesh, India, Maldives, Pakistan, Sri Lanka (Indian Ocean Basin-wide IOBE) (5)	plan being developed	
Black Sea Action Plan	Bulgaria, Georgia, Romania, Russian Federation, Turkey, Ukraine (6)	plan being developed	1992(not yet in force)
North-West Pacific Action	China, Jap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5)	plan being developed	
South-West Pacific Action	Argentina, Brazil, Uruguay	plan being developed	

地域海計劃의 特徵은 行動中心的인 計劃(an action-oriented programme)이라는 것으로서, 環境汚染의 結果 뿐만 아니라 그 原因까지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海洋 및 沿岸地域의 統合管理를 통하여 環境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sup>13)</sup>

한편, 地域海計劃의 推進은 財政的 人員上의 不足으로 인하여 UNEP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엔내의 다른 관련기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 地域海計劃에 참여하고 있는 國際機構와 參與分野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2와 같다.<sup>14)</sup>

13) UNEP (OCA)/NOWP, WG.3/3 (1994), p. 3.

14) UNEP, UNEP Ocean Programme : Compendium of Project, UNEP Regional Seas reports and Studies, No.19, Rev.4(1989-1990), pp. 63-75.



Table 2. UNEP地域海計劃 관련된 國際機構의 參與現況

Nam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rea involve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pollution research
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	pollution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public health aspects and evaluating data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raining in oil-spill respons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circulation studie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equipment intercalibration and training in its us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pecially protected areas
Group of Experts on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ollution	to prepares background reports on the state of the oceans and at mospheric transport pollution to prepare methodological guideline for monitoring marine quality and for undertak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이밖에도 UNEP는 각각의 地域海 實踐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상 지역의 지역조직과도 연계하여 활동하는 바, 紅海地域의 아랍聯合 教育 文化 科學機構(the Arab League Educational, Cutural, and Scientific Organization : ALECSO), 東아시아地域의 동아시아國家聯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南太平洋地域의 南太平洋委員會(South Pacific Commission : SPC) 및 南太平洋 經濟協力局(South Pacific Bureau for Economic Cooperation : SPEC), 南東太平洋地域의 太平洋常設委員會(the Comission Permanente del Pacifico Sur : CPPS) 등이 그 예이다.<sup>15)</sup>

15) Peter M. Hass, "Save the Seas : UNEP' s Regional Seas Programme and the Coordination of Regional Pollution Control Efforts", 10 Ocean Yearbook(1991), p. 197.

## 2. 地域海 實踐計劃의 構成

地域海計劃의 근간이 되는 것은 各地域別 實踐計劃으로서, 이는 해당지역국가의 공통된 필요성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모든 地域別 實踐計劃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지만 그 작성방법은 1975년 地中海實踐計劃 수립이래로 다른 지역에 유사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sup>17)</sup> 1982년 이후에는 UNEP가 작성한 '地域海의 海洋 및 沿岸地域의 保護와 開發을 위한 綜合實踐計劃의 準備 및 履行에 관한 指針과 原則(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Areas of Regional Seas)'에 따라 진행되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작성된 9개의 地域海 實踐計劃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왔다. 즉, 단기적으로는 손상된 해양환경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활동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持續可能的 開發을 위한 해양환경의 종합적인 보호 및 관리를 이룩할 수 있도록 海洋環境의 質에 대한 評價와 그 損傷의 原因을 연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sup>18)</sup>

各各의 地域海 實踐計劃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sup>19)</sup>

### (i) 環境評價(Environmental assessment)

이것은 대상지역 환경문제의 원인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동 문제가

16) Ibid.

17) Peter M. Hass, op. cit., pp. 189-190.

18) UNEP (OCA) /NOWP.WG. 3/3, P. 3.

19) I. Zrajeskij,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Action Plan : Progress, Problems, and Lessons Learned",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Science Cooperation among the East Asian Nations (1992.9.21-23.), pp. 2-4.

당해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강조가 되는 부분은 基準研究(baseline studies), 海洋汚染物質의 汚染源과 그 程度 및 效果에 대한 研究와 監視, 生態界研究, 環境손상을 야기하거나 環境손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沿岸 및 海洋活動과 社會經濟的 要因에 대한 研究, 國家環境立法 現況調查 등이다.

環境評價는 政策決定者가 그들의 천연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취해진 법적 행정적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環境評價를 위하여 最優先的으로 수행되는 것은 當該地域에 관한 比較可能한 資料 및 情報을 蒐集하고 開發하는 것이다.

#### (ii) 環境管理 (Environmental management)

各各의 地域海計劃은 環境管理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한 활동의 예로서는 i) 環境影響評價分野의 訓練에 관한 지역협력계획, ii) 沿岸礁湖, iii) 산업, 농업 및 도시 쓰레기의 통제, iv) 緊急汚染事態를 처리하기 위한 非常計劃의 樹立 등을 들 수 있다.

#### (iii) 環境立法 (Environmental legislation)

지역 및 국가간 협력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체제로서는 基本協定을 체결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技術的인 議定書를 추가하는 방식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지역협정에 따른 地域國家의 法的 責任 負擔은 곧 당해지역의 공통적인 환경문제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政治的 意志를 명백히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 (iv) 組織의 整備 (Institutional arrangements)

活動計劃 채택시 각국 정부는 活動計劃을 위한 常設 또는 暫定事務局 機能을 수행할 조직의 설치에 동의한다. 또한 각국정부는 정부간에

합의된 作業計劃의 진척사항을 검토하고 새로운 활동 및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政府間 會議의 定例化를 결정하게 된다.

(v) 財政的 調整(Financial arrangements)

UNEP는 유엔 또는 기타 조직과 함께 地域海 實踐計劃의 初期段階에서 着手金 또는 基盤造成費用을 제공한다. 그러나 地域海 實踐計劃이 수립된 시점에서 당해지역의 정부가 점진적으로 모든 財政的 責任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각국 정부의 자금조달은 각국 정부가 매년 출연하는 特別地域信用基金의 設置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동 기금은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관리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地域海 實踐計劃에 참여하는 그들 국가조직을 지원하거나 특별활동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재정적으로 기여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은 독립적인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相互依存의인 性格을 갖게 된다.<sup>20)</sup> 즉, 環境評價活動은 환경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환경보전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環境管理를 도출해 내도록 한다. 또한 環境評價活動에 참여함으로써 해당지역 海洋科學者의 技術的 能力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들이 생산한 良質의 資料가 政府의 政策決定資料로서 이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동시에 정부가 UNEP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기도 한다.

環境管理活動은 海洋環境管理業務가 自國의 技術能力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政策決定者가 알게 함으로써 環境管理業務에 과학자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UNEP가 작성 발간하는 地域科學者 人名錄은 地域科學者그룹간의 공동연구를

-----  
20) Peter M. Haas, op. cit., p. 198.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立法的 措置의 경우에는 위의 環境評價, 環境管理 뿐만 아니라 制度的 財政的 措置를 지역국가들이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상호연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 3. 地域海 實踐計劃의 推進節次

地域海 實踐計劃의 수립 및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關聯國家間的 合意와 既存組織의 最大活用에 있다. 地域海 實踐計劃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UNEP와 유엔의 기관이 새로운 組織의 設置를 가급적 回避하고 해당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既存의 組織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推進戰略에 기인한 것이다.<sup>21)</sup>

地域海 實踐計劃은 일반적으로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域海 實踐計劃의 準備段階(preparatory phase)와 實行段階(operational phase)로 구분된다.

---

21) Peter S. Thacher and Nikki Meith, "Approaches to Regional Marine Problems : A Progress Report on UNEP's Regional Seas Program", 2 Ocean Yearbook(1980), p.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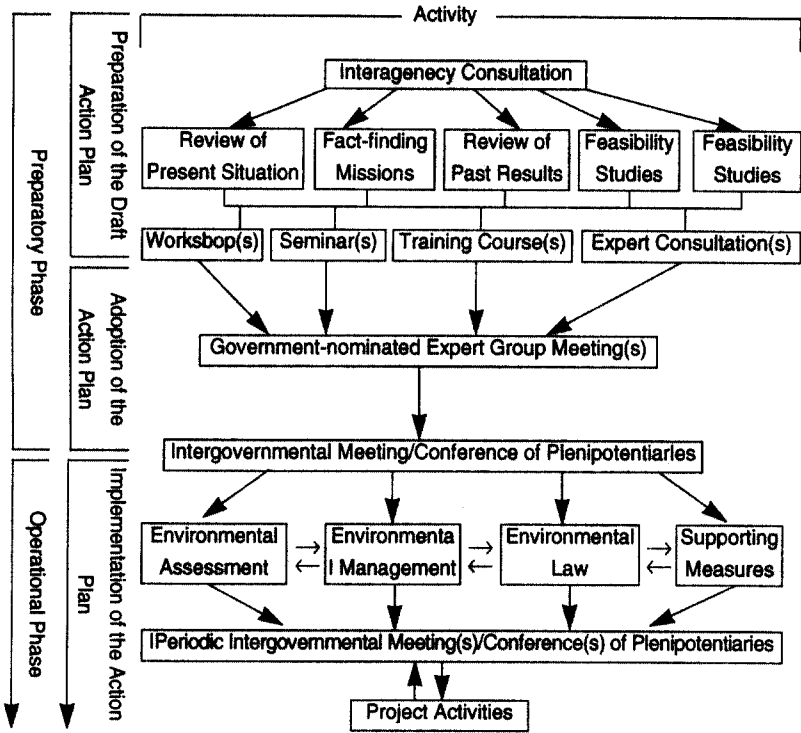


Fig. 2 地域海 實踐計劃의 推進흐름도

자료 : UNEP,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Areas of Regional Seas, UNEP Regional Seas Reports and Studies, No.15(1982), p. 8.

1) 準備段階

準備段階의 開始는 特定地域海 實踐計劃의 樹立을 위한 유엔기구내의 各機關間 協議會(interagency consultetion)의 개최로부터 시작된다. 동 회의에서 i) 대상지역에 대한 一般의인 戰略의 樹立, ii) 기관간 業務의 分擔, iii) 暫定的 推進日程 樹立 등이 이루어진다. 각 기관간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다시 소집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로서는 UNEP를 비롯한 유엔기관의 감독하에 대상지역의 實踐計劃 樹立을 위한 基礎資料의 蒐集이 행하여진다. 이 작업은 사실 확인을 위한 대표단의 보고서, 대상지역에서 기수행된 활동결과의 검토, 제안된 세부계획의 타당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sup>22)</sup> 이 과정에서 대상지역의 科學的 能力的 評價, 대상지역의 環境汚染源과 지역국가의 대응정도 분석, 지역국가의 접촉창구의 확인등이 이루어진다.<sup>23)</sup>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基礎資料와 暫定的인 實踐計劃의 내용은 워크숍, 세미나 또는 전문가 협의회의 형태를 통하여 대상지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고 수정되는 것이 필요한 바, 이는 각각의 지역국가로 하여금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政府間會議에서의 實踐計劃 採擇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UNEP의 草案은 공식적인 채택을 위해 정부간회의에 제출되기 전에 개별적인 지역국가와 협의하는 절차가 행하여진다. 이는 實踐計劃案에 대하여 지역국가가 충분히 검토하여 자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24)</sup>

準備段階의 最終節次는 政府間會議의 召集 및 동 회의에서의 實踐計

22) Ibid.

23) Peter M. Hass, op. cit., p. 194.

24) Peter S. Thacher and Nikki Meith, op. cit., p. 157.

25) Ibid.

劃 採擇이다. 동 회의에서는 實踐計劃의 채택 뿐만 아니라 實踐計劃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實踐計劃의 일부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 회의를 통하여 새로이 제시된 권고 또는 활동은 즉시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된다.<sup>25)</sup>

## 2) 實行段階

地域海 實踐計劃의 實行段階는 준비단계와는 달리 UNEP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나 實踐計劃에 포함되어 있는 細部計劃의 履行은 각국 정부가 그들의 국가조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형태를 띄게 된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각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地域海 實踐計劃에 참여할 國家組織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들 국가조직들은 수행하여야 세부계획의 성질에 따라서 國家組織間 協力組織(cooperative network)을 구성하게 된다. 각각의 협력조직은 초기단계에서는 UNEP를 비롯한 유엔특별기구 및 기타 유엔체제내 조직의 지원을 받는다.<sup>26)</sup>

세부실행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조직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參與하는 國家組織이 과학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低級의 能力을 보유한 國家組織이 實踐計劃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과학 기술적 능력을 발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동 조직이 소속된 국가의 環境管理能力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UNEP가 地域海計劃으로부터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간접효과 중의 하나이다.<sup>27)</sup>

實行段階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부간 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전문가회의 또는 워킹을 통하여 검토를 받는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간 회의는 特定細部計劃의 繼續的 推進與否

26) UNEP,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Areas of Regional Seas*, p. 11.



를 결정하거나 추진방향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地域海 實踐計劃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UNEP와 UN의 특별기구는 초기단계에서 지역국가 정부의 활동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종국적으로는 대상지역국가의 정부 및 국가조직이 獨自的으로 實踐計劃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 Ⅲ. 地域別 實踐計劃 內容分析

#### 1. 地中海地域 實踐計劃(Mediterranean Action Plan)

1975년에 채택된 地中海地域 實踐計劃은 UNEP 地域海計劃이 적용되어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이다.

동 實踐計劃이 대상으로 하는 地中海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가 개도국이 혼재된 18개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3개의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지리적 형상으로도 북대서양의 경우에는 지브랄타해협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고, 흑해와는 다다넬스 해협과 연계되어 있어 隣接海域과의 海水交換에 80년이 소요되는 등 環境汚染에 취약한 半閉鎖海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sup>28)</sup>

地中海의 주된 海洋汚染은 i) 산업화된 북부 地中海沿岸으로부터의 産業廢棄物, ii) 농업으로부터 배출되는 肥料 및 殺蟲劑, iii) 유류의 해상운송으로부터 발생되는 船舶起因汚染 및 iv) 연 1억명에 달하는

27) Peter S. Thacher and Nikki Meith, op. cit., p. 157.

28) Louis J. Saliba, "Protecting the Mediterranean", 2 Marine Policy (1978), pp. 172.

觀光産業으로부터 발생하는 汚染 등이다.<sup>29)</sup>

地中海 海洋汚染에 대한 1972년 이전의 沿岸國의 노력은 간헐적이고 비협력적으로 이루어졌으나 1972년 스톡홀름 人間環境會議를 계기로 代替不可能한 自然資源의 保護 및 合理的인 管理의 必要性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地中海 沿岸國들은 자발적으로 UNEP에게 地中海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實踐計劃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UNEP는 이를 바탕으로 地中海를 7개의 海洋環境危險地域에 포함시켜 實踐計劃 작성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sup>30)</sup>

地中海實踐計劃은 1975년 2월에 소집된 '地中海保護를 위한 政府間會議(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 Barcelona I)'에서 18개 沿岸國 중 16개 沿岸國의 동의로 채택되었다. 동 實踐計劃 채택후 나머지 2개국도 實踐計劃의 實行過程에 참여함으로써 地中海沿岸國 全部가 地域海 環境保護努力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地中海實踐計劃은 地中海 保護를 위한 實質的인 細部計劃의 開發 및 履行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상호연계적인 시도를 담고 있다.

동 實踐計劃은 위의 목적에 따라 4개의 주요한 활동계획을 담고 있는 바, i) 地中海 資源 開發 및 管理를 위한 統合計劃의 樹立, ii) 汚染程度에 대한 調査, 監視 및 評價活動의 調整, iii) 基本協約과 關聯 議定書의 개발, iv) 實踐計劃의 집행을 위한 組織 및 財政의 설치 및 조정 등이 그것이다.<sup>31)</sup>

統合計劃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1977년 2월 유고슬라비아의 스프

---

29) *ibid.*, pp. 172-174.

30) Lynton Keith Caldwell, *op. cit.*, p. 154.

31) UNEP, *Mediterranean Action Plan and the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f the Coastal States of the Mediterranean Reg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New York : United Nations, 1978), p. 3.

리트에서 개최된 地中海 沿岸國間 政府間會議에서 소위 '地中海 Blue Plan' 이 승인되었다.<sup>32)</sup>

이 Blue Plan의 기본적인 장기목적은 地中海 沿岸國들간에 일치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政策決定者 및 計劃立案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손상없이 지속가능한 기초위에서 健全한 社會 經濟開發計劃을 수립하도록 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地中海 沿岸國 政府로 하여금 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合理的인 資源管理와 持續可能한 開發을 촉진시키는 것을 副次的인 目的으로 하였다.<sup>33)</sup>

동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제1단계는 地中海地域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情報를 수집하고 地中海 地域國家의 科學技術的 能力을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후속되는 제2단계 및 제3단계는 여러 분야를 연계한 실질적이고 다원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sup>34)</sup>

環境評價와 관련된 實踐計劃의 주요 요소는 '統合地中海污染監視 및 研究計劃 (the Coordinate Mediterranean Pollution Monitoring and Research Programme : MED POL)' 이다. 이 통합계획에 따라 1976년 이래로 地中海 環境상태 평가를 위한 10개의 소규모계획이 진행되어 왔는 바, 주요한 것으로서는 해수 및 유기물에 축적되어 있는 탄화수소(hydrocarbon), 폴리염화비닐(PCBs), 살충제 및 중금속에 대한 基準研究(baseline study), 오염물질의 이동 및 상승효과에 대한 조사, 陸上污染源의 확인 등이 있다.<sup>35)</sup>

동 계획은 2단계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제1단계는 1976년부터 19

32) Louis J. Saliba, op. cit., p. 179.

33) Ibid.

34) Ibid., p. 180.

35) Ibid., pp. 178-179.

81년까지 수행된 것으로서 16개 국가의 86개 연구소가 참여하여 水銀, 微生物, 기름汚染에 대한 基準研究를 실시하였다. 제2단계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수행된 것으로서 陸上起因汚染을 규제하기 위한 排出 및 放出濃度基準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의 생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8개국의 30개연구소가 참여하였다.<sup>36)</sup>

實踐計劃의 立法的 措置와 관련하여서는, 1976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소집된 '地中海保護를 위한 地中海地域 沿岸國 全權大使會議(the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f the Coastal States of the Mediterranean Region for the Protection of Mediterranean Sea : Barcelona II)'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즉, 동 회의에서 地中海地域의 기본협약으로서 '汚染으로부터 地中海를 보호하기 위한 協約(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sup>37)</sup>과 '船舶 및 飛行機로부터의 投棄에 의한 地中海汚染 防止에 관한 議定書(the Protocol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by Dumping from Ship and Aircraft)'<sup>38)</sup> 緊急事態時 기름 및 其他 有害物質로 인한 地中海汚染防除 協力에 관한 議定書(the Protocol Concerning Cooperation in Combating Pollu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by Oil and Other Harmful Substances in Cases of Emergency)'<sup>39)</sup> 등 2개의 議定書가 채택되었다. 이밖에도

36) Peter M. Hass, op. cit., p. 200.

37) 1976년 2월 16일 채택되어 1978년 2월 12일 발효하였으며, 협약당사국은 18개 국가 및 1개 국가조직(EEC)이다. 협약의 전문은 Peter H. Sand, *Marine Environment Law in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London : Tycooly Publishing, 1988), pp. 1-14 참조

38) 1976년 2월 16일 채택되어 1978년 2월 12일 발효하였으며, 의정서 당사국은 18개 국가와 1개 국제조직(EEC)이다. 의정서의 전문은 Peter H. Sand, op. cit., pp. 15-22 참조.

39) 1976년 2월 16일 채택되어 1978년 2월 12일 발효하였다. 의정서 당사국은 18개 국가와 1개 국제조직(EEC)이다. 의정서의 전문은 Peter H. Sand, op. cit., pp. 22-27 참조.

1980년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陸上起因汚染 防止에 관한 議定書 (the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sup>40)</sup>가 채택되었고, 1982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特別保護區域 設定에 관한 議定書 (the Protocol concerning Mediterranean Specially Protected Areas)'<sup>41)</sup>가 채택된 바 있다.

組織的 側面에서는 締約當事國 政府間會議가 議事決定機構로서 운용되고 있으며, 계획의 지속적인 통제는 4명으로 구성되어 6개월마다 개최되는 運營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협약의 사무국 기능은 UNEP가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地域油類防除센터(Regional Oil Combating Center : ROCC)가 1976년 몰타가 설치되어 정보의 전달, 방제훈련, 비상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海洋公園 및 滅種危機의 種管理를 위해 설치된 調整센터(Coordinating Center for Marine Parks and Endangered Species)는 1990년 튀니지아의 튀니스에서 아테네의 實踐計劃本部로 이전되어 왔다.<sup>42)</sup>

한편, 財政的인 側面은 地中海 信託基金, UNEP 環境基金 및 其他 國際組織의 寄與金으로 충당되고 있다.

地中海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沿岸國家의 意志는 1975년 實踐計劃 채택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그 성과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地中海 海洋環境保護 努力이 성공하게 된

40) 1980년 5월 17일 채택되어 1983년 6월 17일 발효하였다. 의정서 당사국은 15개 국가와 1개 국제조직(EEC)이다. 의정서의 전문은 Peter H. Sand, op. cit., pp. 27-37 참조.

41) 1982년 4월 3일 채택되어 1986년 3월 23일 발효하였다. 의정서 당사국은 16개 국가와 1개 국제조직(EEC)이다. 의정서의 전문은 Peter H. Sand, op. cit., pp. 37-44 참조.

42) Peter M. Hass, op. cit., pp. 200-201.

기본적인 이유는 비교적 발달된 지역국가의 科學技術能力과 環境保護를 위한 政府의 實踐意志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地中海實踐計劃의 현재 진행방향은 '沿岸域의 統合管理 (inter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를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연안의 下水處理施設 설치, 유조선으로부터 발생하는 廢油收用施設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43)</sup>

## 2. 쿠웨이트地域 實踐計劃(Kuwait Action Plan)

쿠웨이트地域 實踐計劃<sup>44)</sup>은 1978년 채택되었으며, 地中海地域 實踐計劃의 모델을 적용한 最初의 地域海 實踐計劃이다.

쿠웨이트實踐計劃이 대상으로 하는 페르시아만은 호르므즈해협을 통해서만 印度洋으로 통하는 좁고 얕은 해역으로서, 고온건조한 기후와 적은 강수량 등으로 인하여 염분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海水의 汚染淨化能力이 저하되어 페르시아만은 세계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sup>45)</sup>

페르시아만의 주된 汚染源은 沿岸國의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産業廢棄物의 배출과 원유의 해상수송에 따른 油類汚染으로 구분될 수 있다.

UNEP에 의한 페르시아만 환경보전노력은 1975년 동 지역을 7개의 海洋環境危險地域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UNEP 地域海計劃의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서 시작되었다.

쿠웨이트地域 實踐計劃은 1978년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쿠웨이

43) Ibid.

44)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Coastal Areas of Bahrain, Iran, Iraq, Kuwait, Oman, Qotar,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UNEP Regional Seas Reports and Studies, No.35(1983).

45) S. H. Amin, "Marine Pollution Regulation in the Persian Gulf", 5 Marine Policy Reports(1982), pp.1-4.

트에서 개최된 지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동 實踐計劃에는 바레인, 이란, 이라크 등 8개 沿岸國이 참여하고 있으며, UN, UNDP, FAO, UNESCO, IOC, WHO, WMO 등 12개 국제기구가 관여하고 있다.

쿠웨이트地域 實踐計劃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목적은 地域의 必要性을 고려하여 沿岸資源의 開發을 環境적으로 健全하고 綜合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現在와 未來世代의 健康과 福祉를 촉진할 수 있도록 海洋環境과 沿岸域을 개발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의 實踐目標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 i)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활동을 포함한 環境狀態 및 海洋環境에 관한 地域의 必要性 評價
- ii) 持續 가능한 基礎위에서 環境의 質에 영향을 미치거나 再生 가능한 海洋資源의 보존 이용에 영향을 주는 活動의 管理指針 開發
- iii) 持續 가능한 基礎위에서 지역의 보호 개발을 위한 協力的 法的 基盤 造成
- iv) 實踐計劃의 성공적 이행을위하여 필요한 國家 및 地域組織의 設置 등 지원 조치

이러한 實踐計劃 아래서 1978년 4월 23일 개최된 쿠웨이트회의에서 1개의 基本協約과 1개의 議定書가 채택되었다.<sup>46)</sup>

쿠웨이트實踐計劃의 調整機能은 1981년에 설치된 '海洋環境保護地

46) i) 오염으로부터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쿠웨이트지역 협력협약(Kuwait Regional Convention for Coop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Pollution) : 1978년 4월 23일 채택, 1979년 6월 30일 발효.

ii) 긴급사태시 기름 및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지역방제협력의정서(Protocol concerning Regional Cooperation in Combating Pollution by Oil and Other Harmful Substances in Case of Emergency) : 1978년 4월 24일 채택, 1979년 6월 17일 발효.

협약 및 의정서의 전문은 Peter H. Sand, op. cit., pp.45-66 참조.

域機構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ROPME)'의 理事會 및 執行委員會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海洋緊急事態時 相互支援센터 (Marine Emergency Mutual Aid Center)'가 1983년 바레인에 설치된 바 있다.

財政的 側面에서는 ROPME가 관리하는 地域信託基金과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UNEP環境基金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實踐計劃의 실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實踐計劃 참가국인 이란과 이라크, 이라크와 쿠웨이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沿岸國間의 敵對關係 내지는 戰爭狀態가 유지됨으로써 實踐計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지 못한데서 주로 기인된 것이다. 더욱이 동 지역의 경우에는 科學的 技術的 基盤이 脆弱한 關係로 다른지역과 비교하여 그 성취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7)</sup>

### 3. 西部 및 中部아프리카地域 實踐計劃

西部 및 中部아프리카地域 實踐計劃<sup>48)</sup>은 1981년 아이보리코스트의 수도 아비잔에서 채택되었다. 實踐計劃이 대상으로 하는 기니아만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서해안은 인도양으로부터 유럽으로의 海上運送路에 해당함으로 船舶에 의한 油類汚染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육역으로부터 연안해역으로 배출되는 生活下水 및 産業廢棄物은 연안주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漁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도 항만건설 등 大規模 干拓産業과 沿岸工事は 해변 및 초호 등에

47) Peter M. Hass, op. cit., p.204.

48)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Coastal Areas of the West and Central African Region. *UNEP Regional Seas Reports and Studies*, No.27(1983).



광범위한 손상을 야기하고 있다.<sup>49)</sup>

이러한 배경하에 전체 20개 沿岸國 중 16개국에 의해 채택된<sup>50)</sup> 實踐計劃의 全體의인 目標은 先進한 바 있는 쿠웨이트實踐計劃과 동일하다.

細部實踐目標로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를 들고 있다.

- i) 沿岸海城, 礁湖, 江河口 등에 대한 오염감시 및 통제의 확대
- ii) 地域協約에 따른 國家次元의 環境立法 促進
- iii) 緊急海洋汚染事故에 대한 協約當事國의 個別的 集團의 對應能力 提高
- iv) 海岸浸蝕 防止를 위한 沿岸城 統合管理의 촉진
- v) 海洋投棄 및 陸上起因汚染 防止를 위한 法的 拘束力있는 協定 또는 議定書 채택
- vi)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實踐計劃 弘報 強化

이와 같은 實踐計劃의 채택과 아울러 서부 및 중부아프리카 국가들은 1개의 基本協約과 1개의 緊急事態에 대비한 議定書를 채택한 바 있다.<sup>51)</sup>

이 實踐計劃의 制度的 側面을 살펴보면, 基本協約의 締約當事國으로 구성되는 政府間會議가 議事決定機關으로서 實踐計劃의 실행의 통

49) Lynton Keith Caldwell, op.cit., p.162.

50) 이 지역실천계획에는 UN, UNDP, ECA, FAO, UNESCO, IOC, WHO, IMO, UNDO, IAEA, IUCN 등 12개 국제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51) i) 서부 및 중부아프리카지역의 해양 및 연안환경보호와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Convention for Cooperation i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West and Central African Region) : 1983년 3월 23일 채택, 1984년 8월 5일 발효.

ii) 긴급사태시 오염방제 협력의정서(Protocol concerning Cooperation in Combating Pollution in case of Emergency) : 1983년 3월 23일 채택, 1984년 8월 5일 발효. 위의 협약 및 의정서의 전문은 Peter H. Sand, op.cit., pp.67-83 참조.

제하도록 되어 있다.

財政的 側面에서도 實踐計劃 참가국이 조성한 信託基金과 UNEP의 環境基金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인 실행사항을 살펴보면, 10개국으로부터 지명된 23개의 연구소로 監視體制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통하여 海洋環境의 質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54만달러에 해당하는 장비 등이 감시체제에 참여하는 연구소 등에 공급되었으며, 213명의 과학자가 훈련을 받은 바 있다.

또한 10개국이 緊急海洋汚染事態에 대비한 非常計劃 樹立에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았으며, 콩고와 아이보리 코스트는 이미 국가차원의 비상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sup>52)</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지역은 科學技術能力이 낙후되어 있으며,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취약한 상태에 있고, 環境科學者와 政府政策決定者간에 相互依存性이 없으므로 단시일내에 海洋環境保護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53)</sup>

#### 4. 카리브海地域 實踐計劃

카리브海地域은 地中海地域 다음으로 UNEP의 주목이 집중되었던 지역으로서, 實踐計劃의 작성 및 실행에 17.9백만달러의 UNEP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sup>54)</sup>

카리브海地域은 27개 沿岸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정부간 협력활동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

52) UNEP/IAMR.6/4, Annex IV, p.20.

53) Peter M. Hass, op. cit., p.208.

54) Peter M. Hass, op. cit., p.206.

同 地域의 主된 海洋汚染은 연안지역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陸上 起因汚染, 거대한 觀光産業으로 인한 汚染, 海底油田開發로 인한 기름 流出事故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진다.

카리브海地域 實踐計劃<sup>55)</sup>은 1981년 4월 자마이카의 몬테이고베이에서 개최된 지역정부간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7개 沿岸國중 25개국 이 참여하고 있고, UN, UNDP, ECLAC, FAO, UNESCO 등 18개 국제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카리브海地域 實踐計劃은 全體的인 目標로서 環境評價와 環境管理 活動의 開發을 통하여 地域政府가 環境問題를 最少化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9개의 細部 實踐目標을 제시하고 있다.

- i) 小規模 島嶼國家의 特別狀況을 고려하여 지역내 모든 국가에 대한 지원
- ii) 開途國간 技術協力을 통하여 지역내 人的, 財政的 및 自然資源의 이용
- iii) 공통문제에 대한 經驗 共有를 통한 地域의 自立 達成
- iv) 自然災害 및 人爲的 災害를 비롯하여 國際的 性質의 環境問題에 대한 협력
- v) 國際支援活動의 촉구 및 조정
- vi) 國家 및 小地域別 既存組織의 강화
- vii) 環境과 開發의 過程에 대한 弘報의 강화
- viii) 건전한 環境管理를 위한 自然資源의 目錄化 및 環境特性의 分析 등을 비롯한 評價
- ix) 위의 목적에 필요한 指針, 計劃 및 手段의 開發을 비롯한 관리

이와 같은 實踐計劃과 아울러 카리브지역은 1983년 3월 콜럼비아의

---

55) Action Plan for the Caribbean Environment Programme. *UNEP Regional Seas Reports and Studies*, No.26 (1983).

카르타제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地域基本協約과 油類流出防除에 관한 議定書를 채택하였으며, 1990년에는 特別保護地域 設置에 관한 議定書를 추가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sup>56)</sup>

實踐計劃에 대한 調整機關은 協約締約國간 政府間會議이며, 財政的으로는 참가국정부가 출연하여 조성한 信託基金, UNEP 環境基金 및 기타 국제조직으로부터의 寄附金으로 유지되고 있다.

實踐計劃의 實行段階와 관련하여, 동 實踐計劃은 지역국가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66개의 細部實踐課題를 도출하고 이 중 25개를 '高度의 優先課題(high priority)'로 지정하였으며, 25개 과제 중 8개를 即時實踐課題로 선정하였다. 即時實踐課題에는 油類流出防除을 위한 非常計劃의 수립, 分水嶺管理를 위한 指針 작성, 환경적인 건강서비스 개선, 沿岸海洋資源 保護, 再生가능한 에너지 생산, 環境教育 및 觀光의 環境에의 惡影響 防止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57)</sup>

그러나 위의 계획에 따른 실제운영상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즉, 環境監視와 관련하여서는 UNEP의 활동이 세인트루

---

56) i) 광역 카리브지역 해양환경 보호 및 개발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Wider Caribbean Region) : 1983년 3월 24일 채택, 1986년 10월 11일 발효.

ii) 광역카리브지역 유류유출방제 협력의정서(Protocol concerning Cooperation in Combating Oil Spill in the Wider Caribbean Region) : 1983년 3월 24일 채택, 1986년 10월 11일 발효.

iii) 특별보호지역 및 야생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Specially Protected Areas and Wildlife) : 1990년 1월 18일 채택, 미발효.

i), ii) 협약 및 의정서의 전문은 Peter H. Sand, op. cit., pp.135-155.

iii) 의정서의 요약은 UNEP, *Register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Other Agreements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Nairobi : UNEP, 1991), pp. 203 -204 참조.

57) Lynton Keith Caldwell, op. cit., p.161.

이스에 '카리브해 환경건강연구소(the Caribbean Environmental Health Institute)' 설치 등 組織의 側面的 補完에 主力한 탓에 環境監視를 위한 裝備 등이 제공되지 못함으로서 環境狀態에 대한 情報의 收集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環境管理側面에서도 수많은 관리활동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地域共同의 問題라기보다는 小數國家에 局限된 問題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편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국가간 科學技術能力 및 制度的 基盤의 隔差가 매우 심하여 지역 전체적인 활동의 도출 및 조정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58)</sup>

#### IV.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의 現況分析

##### 1.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의 推進 現況

###### 가. 北西太平洋地域의 特性

환경적으로 취약한 半閉鎖海인 동해 및 황해와 이를 둘러싼 우리나라,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로 構成되어 있는 北西太平洋地域은 서부유럽이나 중 남미지역 또는 동북아시아 등의 경우와는 그 체제와 발전상에 있어 크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資本主義 經濟構造를 가진 나라인 반면 북한, 중국, 동부러시아 지역은 共產主義體制를 유지하여온 나라들로서 相異한 두 개의 經濟體制가 존재하고 있다.<sup>59)</sup>

이러한 經濟的 特性은 環境보전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先進工業國의 경우는 公업화과정에서 노정된 環境

58) Peter M. Hass, op. cit., pp.206-207.

59) 이상규, "동북아시아의 環境보전을 위한 협력방안 서설", 環境법연구, 제13권 (1991), p. 13.

파괴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규제 체제가 비교적 발달된 상태에 있음은 물론,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 북한, 동부러시아 등은 뒤늦게 시작된 공업화의 여파로 環境破壞가 加速化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에 대한 市民意識이나 環境規制體制는 저조한 편이다.

이와 같은 北西太平洋地域國家간의 懸隔한 經濟發展 程度의 差異는 국가간의 환경보전시책 내지 환경상황에도 큰 격차가 있음은 물론, 政治理念 및 體制의 異質性으로 말미암아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협력율도 출해 나가는 데 많은 난점을 지니고 있다.<sup>60)</sup>

그러나 北西太平洋地域의 국가들은 環境을 관리하는 政府組織이나 海洋科學技術能力面에서는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정치적 이질감도 한중, 한러간의 수교 등으로 인하여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地域協力の 可能性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의 推進 過程

北西太平洋地域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UNEP의 노력은 1989년 개최된 제15차 집행이사회 결정을 비롯되었다. 즉, UNEP 집행이사회는 결정을 통하여 UNEP가 地域海의 오염통제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地域海計劃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위한 새로운 활동계획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였다.<sup>61)</sup> 위의 결정에서 北西太平洋地域이 活動計劃의 準備對象地域으로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2.1만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sup>62)</sup>

동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UNEP 사무부총장이 중국, 일본, 북

60) 상계논문, p. 14.

61) UNEP Governing Council Decision 15/1 "Strengthening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 part Ⅴ.3.

62) 외무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계획 실무협의회 참가보고서, 보고자료 91-29 (경과) (1991), p. 2.

한, 한국 및 러시아내의 UNEP 主管部署(focal point)에 서신을 보내어 地域海 實踐計劃의 개발에 관한 그들 국가의 관심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 결과 모든 국가가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NOWPAP)의 개발에 UNEP가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어서 1991년 5월 29일에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NOWPAP에 관한 비공식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및 러시아의 대표들은 UNEP 地域海計劃의 일환으로 NOWPAP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그들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實踐計劃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91년 10월에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NOWPAP 準備를 위한 國家主管部署 및 專門家間 第1次 協議會(The First Meeting of Experts and National Focal Points o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는 199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實踐計劃의 준비를 위한 作業計劃 및 推進日程과 각국이 UNEP에 제출하여야 할 國家報告書의 내용에 대하여 쉽게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實踐計劃의 地理的 範圍로서는 東海와 黃海로 결정하였고 그 범위의 추후 확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유보하였다.

NOWPAP 준비를 위한 國家主管部署 및 專門家間 第2次 協議會는 1992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UNEP에 의해 작성된 實踐計劃草案<sup>63)</sup>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제2차 협의회의의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UNEP가 재작성한 實踐計劃

---

63) UNEP(OCA)/NOWP.WG.2/5

案은 1993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협의회에 상정되었다.

제3차 협의회의 토의 결과 實踐計劃의 最終案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의 채택을 위한 제1차 정부간 회의를 1994년 9월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상의 진행과정을 UNEP 地域海計劃의 一般의인 進行節次와 비교해 볼 때, NOWPAP은 準備段階의 最終段階에 이르고 있으며, 9월 회의를 계기로 實行段階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案의 內容 分析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案<sup>64)</sup>은 序論部分, 目的 및 目標部分, 細部實踐活動部分, 制度 및 財政의 措置部分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序論部分은 UNEP地域海計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NOWPAP의 추진과정, NOWPAP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目的 및 目標部門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NOWPAP의 總括目的을 설명하고 副次的으로 3가지 細部目的을 추가하고 있다.

NOWPAP의 總括目的은 '未來世代를 위하여 住民의 健康, 生態的 統合性, 地域의 持續性을 보호함과 아울러 地域住民의 窮極的인 長期利益을 달성하기 위하여 沿岸 및 海洋環境을 현명하게 이용, 개발,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sup>65)</sup>

---

64) Draft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UNEP(OCA)/NOWP. WG. 3/3.

65) The wise us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



이 總括目的에 부가된 3가지 細部目的은 다음과 같다.

- i) 沿岸 및 海洋環境資源과 그 資源의 追加의인 損傷 또는 惡化를 통제, 중지 및 방지
- ii) 損傷되고 있으나 復元潛在力이 있는 沿岸 및 海洋環境의 回復 및 復舊
- iii) 지역의 現在 및 未來世代의 資產으로서 沿岸 및 海洋環境의 質과 資源의 長期的인 維持

이와 같은 總括目的 및 細部目的을 추진하기 위하여 NOWPAP은 5가지 短期 및 中期 實踐目標과 28개의 細部實踐分野를 제시하고 있다.

5가지 實踐目標은 UNEP地域海計劃의 一般構成方法인 環境評價, 環境管理, 環境立法의 체제에 따라 i) 環境狀態의 評價, ii) 效果의인 情報體系의 構成, iii) 沿岸域 統合計劃, iv) 沿岸域 統合管理, v) 相互協力を 위한 法體系의 形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방법에서 살펴보면, 環境評價의 方法으로서 i) NOWPAP地域 海洋環境機關目錄(Directory of Marine Environmental Institution in the NOWPAP Region) 작성, ii) 지역국가의 科學學術調查機關의 研究能力 評價, iii) 共同調查事業의 開發, 調査船 및 研究施設의 共同活用 및 地域내 機關間 人的交流의 촉진, iv) 地域共同監視計劃의 수립, v) 國家管轄權 外側 水域의 環境特性調查 등이 제시되고 있다.

효율적인 環境管理의 전제가 되는 지역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측면에서는 i) 지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환경보호 및 관리활동에 관한 '地域情報檢索시스템(Regional Information Referral System)' 개발, ii) 地理情報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GIS) 구축을 위하여 NOWPAP대상지역을 디지털화한 23만분의 1 축적의 도면 작성,

-----  
ment so as to obtain the utmost loong-term benefits for the human populations of the region, while protecting human health, ecological integrity and the region's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iii) GIS개발을 위하여 기개발된 類似電子데이터베이스의 사례 검토, iv) 성된 GIS의 유지 관리를 위한 참여국의 능력배양, v) GIS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한 各國의 沿岸 海洋資源圖(Atlas of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작성 및 배포 등 情報管理의 側面을 강조하고 있다.

合理的인 環境管理를 위한 전제로서 강조되고 있는 地域的 次元에서 的 統合的인 沿岸 海洋環境計劃 수립에 관해서는 6가지의 實踐方案이 제안되고 있다. 즉, i) 國家別 環境目的, 目標, 戰略, 政策에 대한 조사, ii) 資源開發計劃 樹立節次의 開發時間 및 支援 제공, iii) 環境影響評價節次의 수립시 諮問 및 支援 제공, iv) 환경계획수립자 및 관리자에 대한 訓練 提供 및 專門訓練機關의 육성, v) 沿岸 및 海底에 대한 用途設定時 海洋公園 및 休養地 설정을 위한 特別地域의 尤보, vi) 地域環境의 代表的 事例地域 保護등이 이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沿岸 및 海洋環境과 그 資源의 統合管理分野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소로서는 保護(Protection), 復舊(Restoration), 保全(Conservation), 持續可能的한 利用(Sustainable Use)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전제로 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열거되고 있다.

- i) 定期的인 地域海洋環境의 評價
- ii) 特定目的의 水域 설정후 동 목적에 적합한 水質의 管理 및 國家基準에 따른 義務的인 環境影響評價制度 도입
- iii) 陸上污染源으로부터의 排出 統制 및 低減에 대한 參加國間 協力
- iv) 선박, 플랫폼, 기타 구조물로부터의 배출 통제 및 저감에 대한 참가국간 협력
- v) 실질적인 오염 위험을 수반하는 海洋緊急事態時 國家 對應手段의 개발 유지에 관한 권고안 준비
- vi) 觀光産業으로 인한 環境 惡影響 統制

vii) 강 하구,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 습지 등의 沿岸環境保護에 특별한 노력

마지막으로 참가국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地域次元의 法體系 形成部分은 법체계의 형성을 통하여 參加國의 實踐計劃 履行意志를 보장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부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i) 國家別 環境立法現況 調査, ii) 地域協約 開發을 위한 기초로서 參加國 相互間 對話窓口의 設置, iii) 非常事態時 相互協力, 協同, 支援을 위한 議定書 開發, iv) 事故에 기인된 汚染防除에 관한 地域協定の 採擇, v) 地域國家間 環境立法間의 造化 및 地域協定에의 加入 履行을 촉진하기 위한 諮問 및 支援의 獲得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實踐計劃案이 제시하고 있는 制度的 財政的 措置는 다른 지역의 實踐計劃과 매우 유사하게 마련되어 있다. 즉, 制度的 措置로서 實踐計劃의 最高機關으로서 參加國 政府間會議 (the NOWPAP Intergovernmental meetings)를 설치하고 있다. 정부간 회의는 NOWPAP 실행에 따른 모든 실질적, 재정적 문제를 결정하는 政策決定機構로서 隔年制로 개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협정과 의정서에 관해서는 세부실천목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基本協約 (framework convention) 性格의 地域協定을 체결하고, 아울러 非常事態時 相互間 協力, 協同, 支援에 관한 議定書를 채택하는 것은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實踐計劃은 제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는 세부실천활동을 종합조정하는 기구로서 地域調整事務局 (Regional Coordinating Unit : RCU)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RCU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그 기능을 UNEP에 위임하고 있으며, UNEP의 총재로 하여금 참가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세부계획의 실천방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財政的 措置 側面에서도 漸進的인 財政自立을 전제로 하여, 참가국이 유엔분담금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자금으로 '北西太平洋地域 信託基金(Trust Fund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and the Resources of the North-West Pacific region)'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성을 위한 각국의 납부간격은 매2년씩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격년제로 결정되는 사업에 따른 예산액에 따라 정하여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실시는 기금총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基金의 管理는 UNEP 총재에게 위임되고 있으며, 基金의 管理基準은 유엔재정규정 및 규칙, 유엔임원 규정 및 규칙, UNEP 총재에 의해 제정된 기타 행정정책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UNEP는 NOWPAP 신탁기금과 별도로 초기단계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1996년간 약 63만달러의 자금을 UNEP 환경기금으로부터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의 草案은 앞서 서술한 바 있는 UNEP地域海計劃의 一般戰略과 他地域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實踐計劃의 全般的인 體制面에서나 推進背景 등이 他地域의 實踐計劃 작성시에 적용되었던 방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진행되어 왔으며, 목표, 목적, 세부실천방안 등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案에는 새로운 海洋環境保護理論이 삼입되어 있는 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細部實踐計劃을 작성하였다는 점 등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北西太平洋地域海 實踐計劃案은 1992년 개최된 유엔環境開發會議(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sup>66)</sup>를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海洋環境保護 接近方法을 도입하

66)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상돈,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환경법연구, 제14권(1992), pp.193-229; 유철상, "UNCED와 해양환경보전정책", 해양정책연구, 제7권 제2호(1992), pp.329-356 참조.

고 있다. 즉, UNCED는 “環境과 開發에 관한 리우宣言(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통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환경적 요구를 고려한 자원개발, 지구생태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간 협력, 효과적인 환경법규의 제정, 환경영향평가의 국가적 제도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또는 동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21世紀를 위한 細部實踐綱領(Agenda 21)” 제17장 海洋環境保護分野에서는 沿岸水域의 統合管理 및 持續的 開發을 最優先課題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UNCED의 결과에 따라 ‘UNEP 海洋 및 沿岸地域計劃活動센터’는 地域海計劃의 優先的 實行, 沿岸 및 海洋環境에서의 活動에 대한 全體的 이고 統合的인 接近方法의 推進, 陸域과 海域 連繫地域의 統合管理 必要性 強調, 統合沿岸地域計劃 및 管理의 重要性 強調를 새로운 活動방향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sup>67)</sup>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北西太平洋實踐計劃案에서도 總括目的상 未來世代를 위한 生態的 統合性(ecological integrity), 地域의 持續性(the region's sustainability)이 강조되고 있으며, 中·短期 目標에서도 海洋 및 沿岸地域 統合計劃과 管理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細部的인 實踐方案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특징이 내포되고 있다. 먼저, 環境管理의 전제수단으로서 環境評價가 선행되어야 함은 타지역의 예에서와 같으나,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에서는 蒐集된 情報의 管理側面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정보관리를 위하여 最尖端의 情報管理技法인 GIS을 도입하여 實踐計劃이 적용되는 전 지역에 대한 GIS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시킴으로써 政府政策決定者의 意思決定手段으로 사용될 것을 중요한 중·단기 목표로 강조하고

67) Annotated Draft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1993.3), pp.5-6.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相互協力の 側面이 國家間 支援側面보다 강조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北西太平洋地域의 구성국가들이 國家的으로 海洋環境管理에 대한 政府組織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實踐計劃을 수행할 수 있는 科學 技術의 能力이 일정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도국이 포함된 타지역의 예에서와는 달리 訓練의 提供, 技術의 移轉 또는 援助 등 支援措置에 대한 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는 海洋汚染原因中 陸上起因汚染과 船舶起因汚染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海洋汚染은 해안침식 등 물리적 현상에 의한 것 이외에도 그 원인에 따라 陸上起因汚染, 船舶起因汚染, 投棄에 의한 汚染, 大陸棚開發에 의한 汚染, 深海底開發에 의한 汚染, 大氣에 의한 汚染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 바,<sup>68)</sup> 동 實踐計劃에서는 특별히 陸上起因汚染과 船舶, 플랫폼, 其他 構造物로부터의 汚染에 대한 지역국가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實踐計劃의 對象地域인 東海 및 黃海의 汚染現況이 타지역의 주요 오염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해안침식, 해저유전개발 또는 관광산업 등에 의해 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우선순위가 도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 V. 結 語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體系的인 地域的 次元의 海洋環境保全努力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전세계 15개 지역 15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다.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해양환경보전노력을 중추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은 UNEP의 地域海計劃으로서 크고 작은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地域別로 성과의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현재

68)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 내지 제212조.

까지 진행된 경험을 통하여 비추어 볼 때, 그 성패 여부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얼마만큼 충족시켰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i) 環境評價 및 環境管理를 當該地域에 實行하고 適用할 수 있는 海洋科學者의 보유를 비롯한 海洋科學技術의 發達 程度, ii) 當該地域 政府政策決定者의 沿岸 海洋 關聯 政策決定시 海洋科學者에 대한 信賴度, iii) 政府政策決定者와 海洋科學技術分野間의 意見交換體制의 存在 與否 등이 地域海 實踐計劃의 성패 여부를 가늠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sup>69)</sup>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UNEP는 대상지역의 科學技術의 基盤構築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능력여부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대상지역국가의 기존조직을 實踐計劃의 실행에 참여시키고 동시에 장비와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접근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地域海 實踐計劃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요소로서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것은 참여국가 政府政策決定者의 海洋環境保全 實踐意志가 필요하다는 점과 細部實踐計劃의 작성시 相互間에 連繫되는 效率性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西部 및 中部아프리카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UNEP의 초기지원을 받아 수립된 實踐計劃이 중 장기적으로 발전되어 가지 못한 주된 원인은 周邊海洋環境汚染의 深刻性을 인식하고 이를 인접국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政府政策決定者의 實踐意志 缺如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 持續可能한 開發理論에 입각하여 未來世代를 위한 海洋環境 및 資源의 保全을 위한 政府政策決定者와 國民의 認識轉換이 海洋環境保全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實踐計劃의 作成과 細部實踐過程에서의 效率性問題는 純熟的한 바와 같이 實踐計劃要素로서 相互間의 有機的 關係에서 비롯된 것이다. 環

69) Peter M. Hass, op. cit., p.198.

境評價의 結果는 곧 環境管理의 前提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기준이나 다양한 평가요소를 내용으로 하여 평가결과가 작성된 경우 實質的인 環境管理政策의 樹立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環境管理方向을 전제로 한 環境評價方法의 設定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實現可能한 細部實踐方案이 작성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요소들은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의 實行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로서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國家的 次元에서 國內 海洋 및 環境關聯機關의 力量을 총집결하여 北西太平洋地域 實踐計劃의 실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海洋環境監視體制의 構築, 海洋環境關聯技術 및 裝備의 開發에 대한 支援, 政府關係者와 海洋環境 關聯專門家와의 有機的인 協助體制 構築 등 基盤造成을 위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밖에도 實踐計劃의 細部課題導出을 위한 地域國家間 協議過程을 통하여, 對象海域인 東海 및 黃海海洋環境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陸上起因 海洋汚染의 防止에 관한 事項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